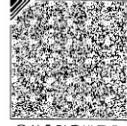


**2010가단315870**

# **판 결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

사건번호 2010가단315870 손해배상(기)

원고 1. 원

전주시

2. 이

서울 관악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류제성

피고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8. 1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음성출석용바코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 원

원고 원 는 2009. 7.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전주덕진경찰서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2009. 12. 2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원고 원 는 2010. 5. 7.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상대로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CIMS'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위 사건의 사건번호, 수사단서, 접수(송치)죄명, 종결일자 등과 피의자신문조서(1면) 등이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6. 16. 경찰청장을 상대로 'CIMS 혹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이하 'KICS'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사건관련정보 '의 삭제를 청구하였다.

경찰청장은 2010. 6. 25. 원고 원에게 청구한 대로 관련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나. 원고 이

원고 이 은 2008. 8.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2008. 12. 29.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원고 이 은 2010. 4. 22. 서울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CIMS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위 사건의 사건번호, 죄명, 접수일, 종결일 등이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0. 6. 14. 경찰청장을 상대로 'CIMS 혹은 KICS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사건관련정보'의 삭제를 청구하였다.

경찰청장은 2010. 6. 17. 원고 이에게 청구한 대로 관련정보를 삭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다. CIMS와 KICS의 관계

2010. 5. 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직후 CIMS에 입력되어 있던 각종 정보들은 KICS로 이관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해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보관·이용 등 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모두 삭제한 행위는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판 단

#####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해석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나(대법원 1998. 7. 24. 96다42789 판결 참조),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 내지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은 위와 같은 법률 근거에 따라 수사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지문정보를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위에서 열거한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시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또한, 2010. 5. 1. 시행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5조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하고,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KICS를 통한 범죄정보 수집·보관·이용 등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9조는 전산 입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서별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를 삭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경찰관이 형사입건된 원고들의 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하여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그 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은 범죄수사 또는 재판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취급자의 의무 및 처벌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이용 행위와 그 삭제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더구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를 대비하여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결정 참조), 경찰관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다. 소결론

경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CIMS와 KICS를 통하여 수집·보관·이용한 행위와 그 정보를 삭제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법률 근거에 따라 정당





온라인 출력용 바코드

한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달리 경찰관이 위 각 법률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경찰관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행위가 위 운영지침상 원칙적 삭제금지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삭제행위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경찰에 의한 보관·이용을 원치 않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경수



# 정본입니다.

2011.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최민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